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54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22. 4. 12.(화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
(전문위원 김동원)

검 토 보 고

(전문위원 김동원)

1. 검토안건

- 안건명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제출경위
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(복지정책과)
- 제출일 : 2022. 4. 5.
- 회부일 : 2022. 4. 6.(의안번호 : 22- 43)

3. 제출이유

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구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지원 대상, 지원신청, 지원중지(안 제4조~제6조)
- 라. 위기가구 발굴 참여자 포상 및 사기진작(안 제7조~제8조)

5. 관계법령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, 제14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22. 3. 3. ~ 3. 23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다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라.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7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, 제14조 규정을 근거로 우리 구 복지사각지대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.
-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
 -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정하였으며
 -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기가정 지원 신청 및 부정한

방법으로 지원받아 적발될 경우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

-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기가정 발굴에 대한 포상 및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을 규정하였고
 -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기가구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금지하는 규정 등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현재 마포구에서는 22년도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

〈2022년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관련 예산 현황〉

세부사업	편성목	예산액(천원)	비고
복지대상자 발굴 지원(구비100%)	계	6,096	
	사무관리비	5,500	홍보물 및 활동매뉴얼 제작
	공공운영비	396	업무용 휴대폰 요금
동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(구비100%)	계	32,930	
	행사운영비	22,800	이웃살피미, 동복지대학 운영
	시책추진업무추진비	3,130	
	사회복지사업보조	7,000	우리동네 행복+ 운영

-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도 위기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2021년에 동작구, 강동구, 성동구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발굴 건당 1건당 3만원에서 5만원을 지역화폐 및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되 동일제보자는 연 최대 10만원에서 30만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.

□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

구 분	동 작 구	강 동 구	성 동 구
조 례 명	위기가구발굴지원에 관한 조례 (의원 발의)	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	위기가구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
제 정 일	2021.4.15	2021.4.28	2021.9.16
주요내용	- 구청장의 책무 - 신고의무 및 지원 신청 등 - 민관 협력 - 포 상	- 신고대상 - 지급기준 및 시기 - 지급제외 - 지급신청 및 환수	- 구청장의 책무 - 신고의무 및 지원신청 등 - 민관협력 - 포 상
보상방법	미 정	1건당 3만원(지역화폐) (동일제보자 연 최대 30만원)	1건당 5만원(온누리상품권) (동일제보자 연 최대 10만원)
보상실적	-	5회	1회
'22년 예산액 (천원)	미 편 성	3,000	750
위기가구 기준	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급여,의료급여,주거급여,교육급여) 책정 가구		

○ 검토의견입니다.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, 제14조 규정에 따라 복지사각 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을 장려하고 보상책 마련으로 구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기에
- 우리 구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지역 위기가구 발굴사업이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이상 서초구 방배동의 모자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[참고자료]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제9조의2(위기가구의 발굴)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(이하 이 조에서 “위기가구”라 한다)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4. 7.>

1.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
2.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

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4조(민관협력)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은 지역 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,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(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)에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.

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)

1. 비용발생 요인

- 안 제7조(포상)에 따라 개인 및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등에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포상 지원
- 안 제8조(참여자의 사기 진작 등)에 따라 활동 장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보상과 지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우리구 「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

4. 작성자 :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박소정(02-3153-8848)